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 | 2 |
| ※ 참고자료 .....                          | 7 |
|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요 .....                | 7 |
| 2.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제4기) 구성 현황 .....        | 8 |
| 3.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    | 9 |

##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 Ⅲ. 검토의견

####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sup>1)</sup>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br>~ ③ (생략)<br>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 |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br>~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br>-----<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 |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            |                                                                                                       |
|------------|-------------------------------------------------------------------------------------------------------|
| ⑤ ~ ⑦ (생략) | <div style="text-align: center;"> <u>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br/>           ⑤ ~ ⑦ (현행과 같음)         </div>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sup>2)</sup>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등 국가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수문조사기본계획,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하천유지유량 산정(고시) 등을 심의·의결함.

현행법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명(기후부 차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①정부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②위촉위원은 수자원·환경·도시·법률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sup>.

2) **법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법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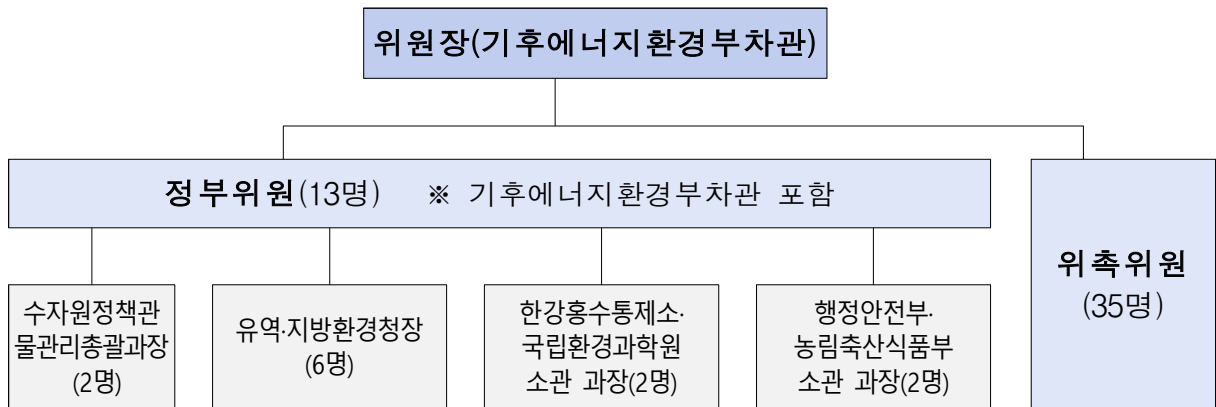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

|                       |      |                                                                                                                    |
|-----------------------|------|--------------------------------------------------------------------------------------------------------------------|
| 위원장(1명)               |      |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
| 부위원장(1명)              |      | 기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후부 장관이 지명(위원과 중복)                                                                    |
| 위원<br>(위원장 포함 50명 이내) | 정부위원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기후부 장관 임명                                                                                            |
|                       | 위촉위원 | -대학 조교수 이상(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학, 경제학 등)<br>-판사·검사 또는 변호사<br>-수자원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범, 입법, 경제 분야 전문가<br>-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정수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4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현재(2026. 1월 말 현재)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13인, 위촉위원35인 등 48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제4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범·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민간위원)을 수자원·환경·도시·법률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의결 시 지방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학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아 지방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큰 102개 정부위원회를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sup>4)5)</sup>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sup>6)</sup>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위원에 포함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sup>7)</sup>, 하천유

---

4) 법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2025. 12. 16. 참조

5) 이와 관련하여 22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중에 발의되었음(참고자료 3.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개정 현황 참조)

6)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7) **홍수위험지도**: 홍수 예상·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효율적 수방대책 수립을 지원, 국민들에게 위험 정보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도. 국가하천 73개소, 지방하천 3,767개소와 1,654개 읍면동 대상으로 작성

**가뭄취약지도**: 평가대상 지역(3,500개 읍면동)의 가뭄조사, 가뭄발생 특성을 고려한 가뭄취약성

지유량<sup>8)</sup>의 산정,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sup>9)</sup>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을 위촉위원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 주요 수자원 정책 심의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위촉위원 선정 시 17개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7

분석을 통해 지역별(유역별) 가뭄취약 정도를 표시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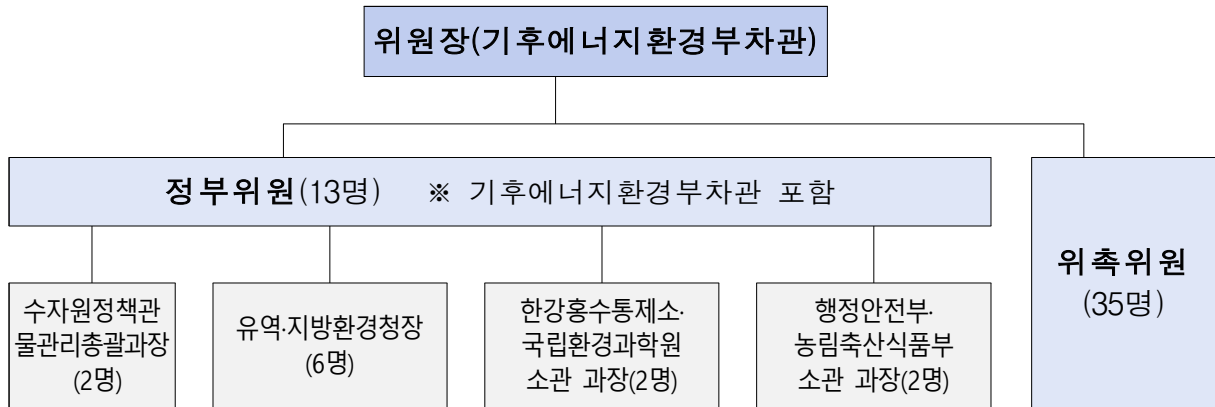
8)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등의 하천수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수자원·물환경실무용어사전)

9) **법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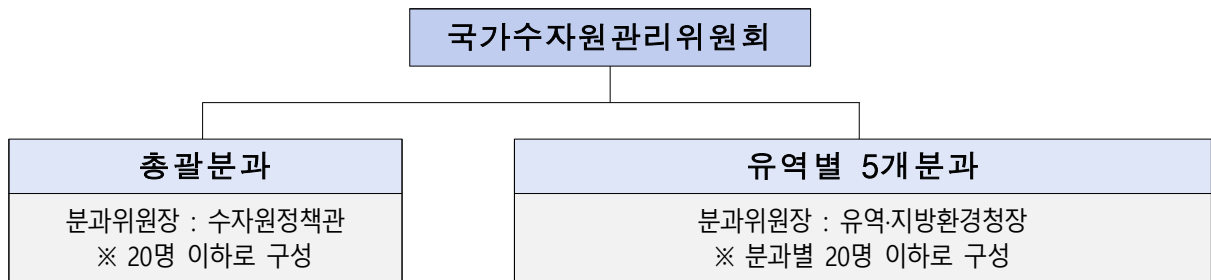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요



※ 정부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수자원법」 제29조제3항·제4항)

- **(운영)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6개 분과)하고, 분과위원회의 조정·심의는 위원회의 조정·심으로 봄(「수자원법」 제29조제6항)



※ 분과별 20명 이하로 구성(「수자원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기능) 각종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변경, 국가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수자원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 참고자료 2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제4기) 구성 현황<sup>10)</sup>

### □ 구성현황

|                       |                                                                                                                                                                                                                  |
|-----------------------|------------------------------------------------------------------------------------------------------------------------------------------------------------------------------------------------------------------|
| <b>정부위원<br/>(13명)</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위원장)</li> <li>▶ (8)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총괄과장, 유역·지방환경청장</li> <li>▶ (2)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수자원연구과장</li> <li>▶ (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장</li> </ul> |
| <b>민간위촉<br/>(35)</b>  | ▶ (35) 수자원·환경·도시·경제·법률 분야 민간위원 35인                                                                                                                                                                               |

### ○ 위촉직 민간위원

| 연번 | 성명  | 소속                       | 분야  | 총괄<br>분과 | 한강·원주<br>분과 | 금강<br>분과 | 영산강·<br>전북 분과 | 낙동강<br>분과 |
|----|-----|--------------------------|-----|----------|-------------|----------|---------------|-----------|
| 계  | 35  |                          |     | 14       | 14          | 14       | 14            | 14        |
| 1  | 강부식 |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2  | 권지영 |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 센터장          | 환경  |          |             | ○        | ○             |           |
| 3  | 김구연 | 경남대 창의융합대학 교수            | 환경  | ○        |             |          |               | ○         |
| 4  | 김성태 |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 처장         | 환경  | ○        |             |          |               | ○         |
| 5  | 김이형 |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         | 환경  | ○        |             | ○        |               |           |
| 6  | 김익재 |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연구위원    | 환경  |          |             | ○        | ○             |           |
| 7  | 김혜진 | (주)KSM기술 수자원부 상무         | 수자원 |          | ○           |          | ○             |           |
| 8  | 박문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 | 수자원 | ○        |             |          | ○             |           |
| 9  | 박재필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  |          | ○           |          | ○             |           |
| 10 | 백종철 | 강릉원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11 | 심은중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략기획실 실장      | 수자원 |          |             | ○        | ○             |           |
| 12 | 안시권 | (주)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 수자원 | ○        |             |          |               | ○         |
| 13 | 안재현 |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14 | 오규창 | 한국하천협회 회장                | 수자원 |          | ○           | ○        |               |           |
| 15 | 우지연 | (주)이산 수자원부 상무            | 수자원 |          | ○           |          | ○             |           |
| 16 | 유인호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법률  | ○        |             | ○        |               | ○         |
| 17 | 윤성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원  | 수자원 |          | ○           |          | ○             |           |
| 18 | 이상민 |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도시  | ○        |             |          | ○             |           |
| 19 | 이상은 |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  | 수자원 |          |             | ○        |               | ○         |
| 20 | 이승오 |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21 | 이승욱 |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센터장       | 도시  |          |             | ○        |               | ○         |
| 22 | 이주헌 |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23 | 장병훈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 부문장      | 수자원 | ○        |             |          |               | ○         |
| 24 | 정건희 | 호서대 토목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25 | 정관수 |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 26 | 정일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 | 수자원 |          |             | ○        |               | ○         |
| 27 | 조영철 |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  | ○        |             | ○        |               |           |
| 28 | 차윤경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  |          | ○           |          | ○             |           |
| 29 | 최정윤 |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          | 도시  |          | ○           |          |               |           |
| 30 | 최정현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  |          | ○           |          |               | ○         |
| 31 | 한건연 | 경북대 방재연구소 교수             | 수자원 | ○        |             |          |               | ○         |
| 32 | 현윤정 |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연구위원    | 수자원 | ○        |             | ○        |               |           |
| 33 | 홍은미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            | 환경  |          | ○           |          |               | ○         |
| 34 | 황국화 |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교수          | 환경  |          | ○           |          | ○             |           |
| 35 | 황규남 |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          | ○             |           |

1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고자료 3

###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 현황<sup>11)</sup>

| 연<br>번 | 소관 상임위<br>(소관 부처)                          | 법률<br>(대상 조문)                                               | 주요 내용                                                                     | 대표 발의의원<br>(의안번호)  |
|--------|--------------------------------------------|-------------------------------------------------------------|---------------------------------------------------------------------------|--------------------|
| 1      | 기획재정<br>위원회<br>(기획재정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br>(제9조제3항)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정태호의원<br>(2215068) |
| 2      | 행정안전<br>위원회<br>(소방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br>및 복지 기본법<br>(제9조제3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br>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br>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br>제도화      | 윤건영의원<br>(2214497) |
| 3      | 농림축산<br>식품해양<br>수산위원회<br>(농림축산<br>식품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br>원회 설치 및 운영에<br>관한 법률<br>(제3조제1항·제3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br>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br>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br>제도화               | 윤준병의원<br>(2214900) |
| 4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br>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br>관한 특별법<br>(제10조제3항·제4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br>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윤준병의원<br>(2214898) |
| 5      |                                            | 동물보호법<br>(제7조제3항)                                           |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윤준병의원<br>(2214892) |
| 6      | 농림축산<br>식품해양<br>수산위원회<br>(해양수산부)           | 해양폐기물 및<br>해양오염퇴적물<br>관리법<br>(제5조의2제3항)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윤준병의원<br>(2214893) |
| 7      | 농림축산<br>식품해양<br>수산위원회<br>(산림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br>법률<br>(제8조제4항)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윤준병의원<br>(2214897) |
| 8      | 산업통상<br>자원중소<br>벤처기업<br>위원회<br>(산업<br>통상부) | 소재·부품·장비<br>산업 경쟁력 강화 및<br>공급망 안정화를 위한<br>특별조치법<br>(제8조제3항)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br>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br>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br>제도화          | 김원이의원<br>(2214427) |
| 9      |                                            | 산업융합 촉진법<br>(제8조제3항·제4항)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br>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br>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 김원이의원<br>(2214424) |
| 10     | 기후에너지<br>환경노동<br>위원회                       | 수자원의 조사·계획<br>및 관리에 관한 법률<br>(제29조제4항)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김주영의원<br>(2214770) |

11) 자료: 법제처

|    |                              |                                   |                                                            |                    |
|----|------------------------------|-----------------------------------|------------------------------------------------------------|--------------------|
| 11 | (기후에너지<br>환경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br>특별법<br>(제37조제3항)   |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이학영의원<br>(2214814) |
| 12 |                              | 환경보건법<br>(제10조제3항)                |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박정의원<br>(2214982)  |
| 13 |                              | 에너지법<br>(제9조제5항)                  | 에너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br>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김주영의원<br>(2214769) |
| 14 | 국토교통<br>위원회<br>(국토교통부)       | 건축기본법<br>(제13조제3항)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복기왕의원<br>(2214583) |
| 15 |                              | 국토기본법<br>(제27조제3항)                |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복기왕의원<br>(2214580) |
| 16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br>관리 기본법<br>(제18조제3항)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복기왕의원<br>(2214584) |
| 17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br>(제16조제3항)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br>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br>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br>제도화 | 복기왕의원<br>(2214586) |
| 18 |                              | 물류정책기본법<br>(제18조제2항)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복기왕의원<br>(2214587) |
| 19 |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br>율화법<br>(제107조제3항)   |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복기왕의원<br>(2214582) |
| 20 | 성평등가족<br>위원회<br>(성평등<br>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br>(제3조의4제1항)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김한규의원<br>(2215251) |
| 21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br>(제10조제4항)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김한규의원<br>(2215250) |
| 22 |                              | 청소년 기본법<br>(제10조제4항)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br>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br>참여하도록 제도화       | 김한규의원<br>(2215248) |